

시 민

주우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이기영	엄연숙	장혁재	최동윤	12/27 김상범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815
결재일자	2013.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51호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예산담당관	김상한
	감사담당관	이해우
	인사과장	윤영철
	일자리정책팀장	김수덕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2013. 12.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무 □
	● 전문가 : 유 ■ () 무 □
	● 음브즈만 : 유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자 ■ 균형인자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 의용	● 중앙부처 : 유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무 ■
	● 기업 : 유 □ () 무 ■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무 □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 정규직 전환(1차, 시장방침 101호)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단위: 명)

	계	1차('12.5.1)	2차('13.1.1)
계	1,369	1,133	236
본 청 · 사 업 소	484	325	159
투 자 출 연 기 관	885	80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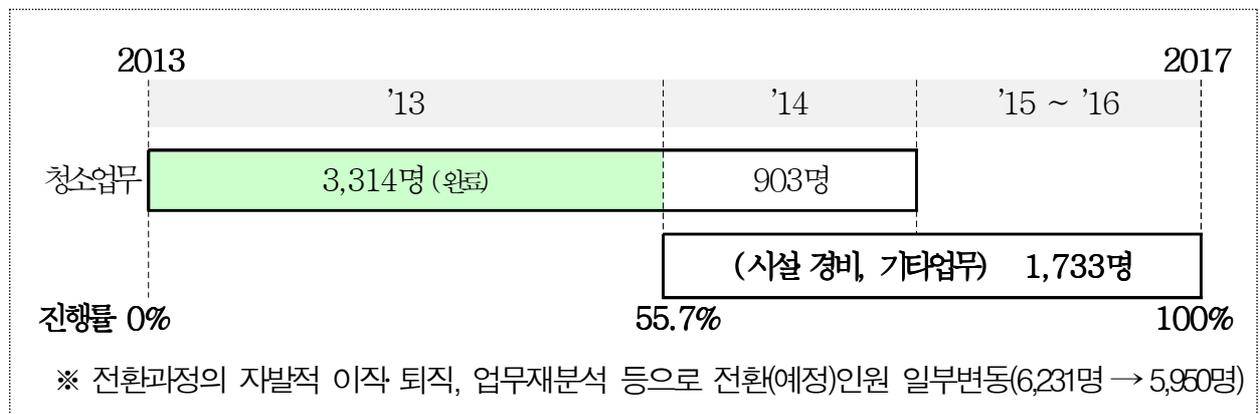
□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여명 단계적 정규직화(2차, 시장방침 376호)

- 단계·시기·대상별 추진으로 향후 5년내 전원 정규직화 로드맵 마련
- 1단계로 우선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후, 2단계로 정규직화를 추진



- 계약이 종료된 40개 기관 청소근로자 3,314명 직접고용 완료(12월 기준)

※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는 자회사 설립(4월, 6월)으로 청소근로자 정규직 전환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2차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14년부터 전환이 예정인 시설·경비 등 근로자에 대한 세부전환계획임

요 약

- ◆ 전환방법: 우선 직접고용 후 공무원직 전환
 - 업체와 계약종료시점에 기관별 직접고용, 기존 근무인원 고용승계
- ◆ 임금설정: 기관·업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직무급 설계
 - 업체이윤 범위 내에서 임금을 개선하되 기관·업무 특성을 고려 임금조정
 - 성과급 도입을 통한 업무보상강화로 근로의욕 고취 및 업무효율성 제고
- ◆ 정년설정: 업무특성별로 정년을 차등적용
 - 법제도적 정년인 60세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경비·주차관리 등 고령자 적합업무는 준공무원직 방식으로 65세 정년으로 운영
- ◆ 인력관리: 전환시 한시적 준공무원직 운영, 근무평가 철저
 - 직접고용 후 공무원직 전환을 위한 심사선발 실시, 근무평가를 통한 성과보상

1 전환절차

□ 전환시기

○ 우선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정규직화 시점 일괄 공무원직 전환

- 부서·기관별로 업체와 계약종료 시점에 직접고용 실시
- 다만, 직접고용 전환준비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와 사전협의 후 최대 3개월 이내 유예가능

구 분	전환시기	
	직접고용(준공무원직)	정규직화(공무원)
1차(청소용역)	'13 ~ '14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5.1.1
2차(시설경비)	'14 ~ '15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6.1.1
3차(기타업무)	'15 ~ '16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7.1.1

※ 자회사설립 기관(원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예정: 농수산물공사) 직접고용시 정규직으로 채용

□ 전환방법

○ 기존 근무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고용승계

- 기준일자(2차 대책 방침일: '12.12.7)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및 반장·소장 등 관리 인력은 직접고용 전환시 심사선발
- ※ 심사선발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절차 기준에 따라 추진(채용공고 제외)
- 향후 공무원 전환시는 공무원 전환심사 절차에 따름

○ 계약연장 또는 재입찰시 재직 중인 근로자 고용승계 철저

- 용역 계약시 과업지시서 등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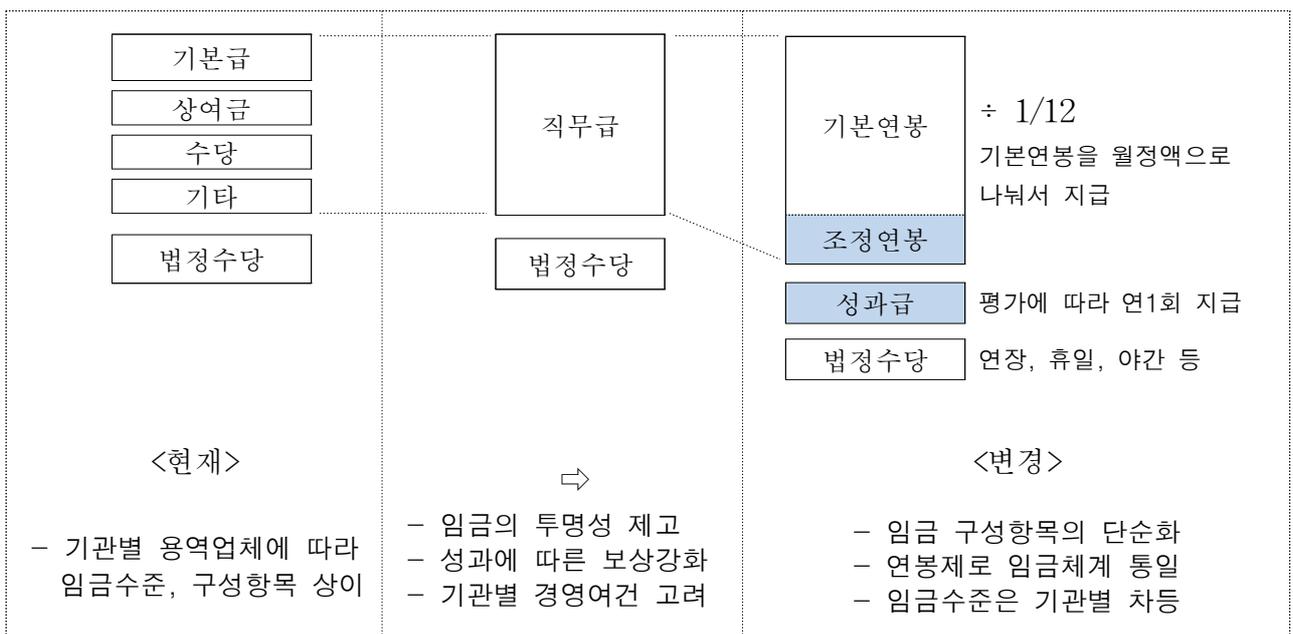
2 **임금**

□ 임금체계(직무급: 성과급적 연봉제)

○ 현재 임금수준을 직무급으로 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연봉제

- 직접고용에 따른 업무효율 제고 및 성실한 근로자 보상강화
- 2차 대책에 따른 전환근로자는 직무급(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 고용형태(준·공무원)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음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간접고용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 수행기관)

□ 임금구성 항목

○ 기본연봉: 직무급(현재 임금수준)+ 조정연봉

- 기관·업무별 현재 임금수준을 직무급으로 하고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조정연봉을 가산한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조정연봉

직무급(현재임금) × <기관업무별 임금인상률(별첨 2)>

- 노동력 제공에 대한 적정보상(업체이윤의 근로자 환원)
- 최초 전환시는 조정연봉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조정

○ 성과급: 업무에 대한 보상강화로 근로의욕 고취

- 경쟁유발 목적이 아닌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 근로환경 조성
- 최고 기본연봉의 5% 이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 1회 지급
- 지급 기준일은 매해근무(1.1~12.31)에 대해 연말 평가를 통해 연초에 지급하되, 직접고용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

※ 예) '14.6월 직접고용한 경우, 1년이 지난 '15.6월 이후 15년 말 평가에 따라 성과급 최초지급

성과평가

'서울시 공무원관리규정'에 따른 근무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보통)	B(미흡, 불량)
성과급의 비율	기본연봉의 5%	3%	1%
등급분포 비율	평가대상의 2할	7할	1할

* 평가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은 '공무원관리규정 제15조'에 따름

○ 수 당: 기관특성에 따라 운용하되, 무분별한 수당신설 지양

- 기존 일률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정기·고정(상여)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하며, 특정인력에 대한 수당(직책·성과수당 등)은 미포함
- 기관특성에 따라 특정수당 등을 연봉 내에 포함가능(내역 명문화)

※ 제수당의 책정과 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따름

연봉외수당

전환에 따른 임금보전형 수당, 법정수당(야간, 휴일, 연차 등)

- 기존 임금수준 저하방지 및 반장소장 등 임금보전을 위해 기관별 직책수당 등 책정
- 업무특성에 따라 통상적 근무형태에 따른 야간·휴일 등 초과근로를 연봉에 포함할 수 있으나, 연봉계약시 내역을 명문화하고, 그 이상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추가지급

□ 임금적용

○ 기존 임금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을 적용

- 직접고용 전환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최종 임금인상률이 총지급액 (성과급 3%기준)을 기준으로 10%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
- 기존 용역도급액 내에서 추가소요 예산 없이 직접고용 추진

○ 청소 정규직화시점('15.1.1) 이후 직접고용 전환인원 전체로 확대

▶ '14년 청소업무 임금

- 청소업무의 임금은 (별첨3)의 직무급테이블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 청소(성과급 없는 직무급 운영중)도 공무원 전환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예정)

<성과급적 연봉의 적용례>

구분	사례 설명	○○본부 경비 직원 A	○○사업소 시설(기계기사) 직원 B
현재임금 (직무급)	현재 임금을 직무급으로 설정 (지난 3개월 평균임금)	연봉 17,676,000원 (월 1,473,000원)	연봉 21,756,000원 (월 1,813,000원)
기본 연봉	1 차 조정 기관 업무별 임금인상률 적용	연 530,280원 ↑ (17,676,000원 × 3%) ※인상률 기준(경비, ○○본부) ↓ 연봉 18,206,280원 (월 1,517,190원)	연 1,087,800원 ↑ (21,756,000 × 5%) ※인상률 나군(시설, ○○사업소) ↓ 연봉 22,843,800원 (월 1,903,650원)
	2 차 조정 연봉표 적용 (근접한 월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삼음)	연 94,920원 ↑ ↓ 연봉 18,301,200원 (기준임금: 월 1,525,100원) ※ 연봉표적용 경비 6등급	연 346,200원 ↑ ↓ 연봉 23,190,000원 (기준임금: 월 1,932,500원) ※ 연봉표적용 시설(A) 3등급
성과급	기본연봉의 1~5%를 평가에 따라 지급	연 915,060원 ↑ (18,301,200 × 5%) ※ '탁월' 평기로 5% 적용시	연 231,900원 ↑ (23,190,000 × 1%) ※ '미흡' 평기로 1% 적용시
전환 후 총지급액	기본연봉+ 성과급 (근무상황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	연봉 19,216,260원 (월 1,601,355원) ※ 월 13만원 인상(8.7% ↑)	연봉 23,421,900원 (월 1,951,825원) ※ 월 14만원 인상(7.7% ↑)

※ 세전, 4대보험 근로자분 포함

3 정년

□ 업무별 정년

- 직영으로 전환하는 업무의 기본정년은 법·규정에 따라 60세
 - 기관별 전직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관정년이 있는 경우 기관의 정년을 따름
 -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서울시 공무원직 관리규정(제35조)
- 청소와 같은 고령자 적합업무(경비, 주차관리, 운전 등)는 예외적으로 정년이후 준공무직으로 고용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65세까지 근무
 - ※ 고령자 적합업무는 신규채용시 50세 이상을 고용하고, 정년이후 준공무직 재운용시에는 본인의사, 건강상태, 근무평가 등에 따라 대상자 선발

	대상인원(명)	평균연령	근무상한 연령
시설	766	48	
경비	509	51	65
주차관리	281	51	65
운전	59	61	65
안내	57	29	
매수표	27	28	
운영지원	15	63	65
취사	7	52	65
정화방역	6	34	
동물관리	4	36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년의 적용시기

- 직접고용이후 공무원 전환시점('16.1.1, '17.1.1)부터 정년 적용
- 공무원 전환시점까지는 정년적용을 유예해 연령에 관계없이 근무
- 퇴직시점은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임(공무직과 동일)

< 본청·사업소 공무원 전환예정 인원 >

	계	청소업무	시설· 경비업무	기타업무
전환예정일		2015.1.1	2016.1.1	2017.1.1
인원 (공무직 정년 60세 이하)	691	269 (현 58세 이하)	347 (현 57세 이하)	75 (현 56세 이하)

□ 직접고용 전환근로자

○ 직접고용된 근로자는 정규직화 시점까지 준공무원 운용

- 직접고용하고 업무별 정규직(공무원) 전환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준공무원(기간제근로자)으로 운용
- 단, 고령자 적합업무(정년 65세)는 기본정년 후 준공무원으로 재운용

〈준공무원〉

1.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외주용역회사로부터 市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2.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이나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단, 공무원 전환, 준공무원 재운용 등 고용형태 변경시 심사를 통해 계속근로 여부 결정)
3.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공무원관리규정 준용

○ 업무별 정규직화 시점에 일괄 공무원 전환

- 전환근로자는 준공무원 또는 공무원 형태로 운용되며 임금 및 복무 등 기본적 근로여건은 차이가 없음
- ※ 관련규정(기간제, 공무원관리규정)에 따라 일부 복무 등에 따른 차이는 발생

□ 복무관리

○ 휴일 및 결근처리

- 근로자의 날(5.1) 및 당해 주간 근무일 만근시 주휴일은 유급이나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월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주 40시간+ 유급주휴수당 8시간)
- 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감하여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보수계산)

-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법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차휴가

-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관련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
-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 경우, 전환 첫해는 연가보상비 지급 불필요
- ※ 첫해 연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시점 연가보상비 정산시 공제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특별휴가, 공가, 병가

- 특별휴가 및 병가는 기간제 및 공무원직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해 적용하되, 준공무원직의 공가는 공무원직관리규정에 따라 적용

	특별휴가	공가	병가
공무원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따름 휴가일수 30일 이상일 때만 공휴일 포함	-공무, 병역에 따른 소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천재지변 등 출근이 불가한 때	연 60일 병가(30일 유급)
준공무원직	경조사기간은 휴무일 포함	상동	30일 이내 병가(무급)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 고용형태(준공무원직, 공무원직) 변경시 관련 제규정에 따라 각각 정산

<청소업무 퇴직금 지급례>

구 분	'13~'14(예시)	'15~'16	'17~'21
고용형태	준공무원직 (기간제근로자)	공무원직	준공무원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시기		↑	↑

※ 자회사 정규직 채용인원은 자체규정에 따름

□ 근무평가

○ 준공무직 근무평가 철저(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평가)

- 근무평가는 성과급의 책정, 공무직 전환심사에 활용되므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 관리 철저

※ 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 ④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시 확인자와 협의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한 후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공무직이 없는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더한다.

1. 탁월(91점 ~ 100점) : 2할
2. 우수(81점 ~ 90점) : 4할
3. 보통(71점 ~ 80점) : 3할
4. 미흡(61점 ~ 70점) : 0.5할
5. 불량(60점 이하) : 0.5할

□ 공무직 전환

○ 업무별 정규직화(공무직 일괄 전환) 시점 전 심사선발 실시

- 전환대상 평가 및 전환절차는 '1차 비정규직 대책'(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준해 추진
-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이 아닌 필요최소한의 평가(네거티브 방식)

※ 공무직 전환시점(청소 '15.1.1, 시설·경비 '16.1.1, 기타 '17.1.1)

□ 신규채용

○ 업무별 공무직 전환시점까지는 한시적으로 준공무직으로 채용

- 기간제관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하나 공무직 전환대상 근로자이므로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절차 진행

○ 공무직 전환시점 이후 신규채용시는 공무직으로 채용

- 고령자적합업무(정년 65세)는 신규채용시 50세 이상을 고용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직접고용 이후 인력관리·운용은 경영효율성과 기존 조직 내 근로자와 융화를 고려해 본 방침을 준용하되 근로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관의 자체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공통사항

 부서·기관별 자체 전환계획수립 및 전후 조치 철저

1. 준공무직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예산담당관)
2. 직접고용 또는 공무직 전환시 공정성 제고방안 협의(감사담당관)
3. 직접고용 전환 후 신분증 발급요청(인사과)
4. 부서·기관별 전환계획 및 전환결과의 통보(일자리정책과)
 - ※ (별첨5) 결과보고 양식 활용

 인사담당부서에서 책임있게 관리

- 직접고용해 준공무직운영부터 인사담당(부서)에서 책임 있게 관리

 전환예정업무의 계약연장 조치

- 시설·경비 '14.3월 전 계약종료시 3개월 내 연장(일자리정책과 통보)
- 계약연장 또는 재입찰시 재직 중인 근로자 고용승계 철저

 직접고용 전환, 신규채용 등에 공정한 업무처리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

 전환(예정, 완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편의시설(휴게실, 샤워실 등)개선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부서기관별 사항

 정규직 전환을 위한 채용, 심사절차에 대한 감사(감사담당관)

- 기관별 직접고용, 공무직 전환심사시 감사담당관 현장 점검 및 입회

 외주용역업무의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전용 협조(예산담당관)

 공무직관리규정 정비 및 공무직 전환준비(조직담당관)

- 직접고용 후 공무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및 정원확보

※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차, 2차 비정규직 대책 및 제규정을 따름

<별첨 1>

직접고용 전환추진 근로자 현황(12월)

	계	청소	시설	경비	기타								
					소계	주차	안내	운전	매수표	동물관리	운영지원	취사	정화방역
총 계	5,950	4,217	767	507	459	281	58	60	27	4	15	8	6
분청·직속기관	시민봉사담당관	12	5	3	4								
	민방위담당관	5	3	2									
	행정국 총무과	165	115	50									
	도로시설과	51				51			51				
	역사도심관리과	7	4		3								
	소방재단본부	144	72	61	10	1	1						
	시의회사무처	14	14										
	시립대학교	101	64	20	17								
	인재개발원	9	9										
	보건환경연구원	19	8	11									
	농업기술센터	1	1										
	소계	528	295	147	34	52	1		51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132	86	26	20								
	한강사업본부	10	3	4	3								
	공무원수련원	17	11	4	2								
	데이터센터	12	5	3	4								
	어린이병원	28	16	7	5								
	은평병원	29	13	7	9								
	서북병원	35	16	10	9								
	아동복지센터	8	3	2	3								
	서울역사박물관	59	19	12	21	7			7				
	청계역사박물관	22	5	6	5	6			6				
	한양도성연구소	28	6	7	8	7			7				
	한성백제박물관	48	12	13	23								
	서울도서관	14				14			1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6				26	26						
	시립미술관	46	17	10	19								
	서울대공원	173	53	73	16	31			27	4			
	교통방송	18	6	6		6			6				
	품질시험소	5	2		3								
도로사업소(6개)	24	12		12									
중량물재생센터	6	2		4									
소계	740	287	190	166	97	26	34	6	27	4			
투자출연기관	서울메트로	1,629	1,469	120	40								
	도시철도공사	1,658	1,658										
	서울시설공단	519	216	106	171	26	13	4			9		
	농수산식품공사	408	93	62	8	245	227	1	3			8	6
	SH공사	38	22	10	6								
	서울의료원	131	63	35	15	18		18					
	서울연구원	15	9	2	3	1		1					
	산업통상진흥원	47	21	15	11							2	
	신용보증재단	32	14	8	5	5	3						
	세종문화회관	139	47	49	36	7	7						
	여성가족재단	39	10	18	4	7	3					4	
	서울복지재단	2	2										
	서울문화재단	11	5	2	4								
	시립교향악단	2	2										
서울디자인재단	12	4	3	4	1	1							
소계	4,682	3,635	430	307	310	254	24	3			15	8	6

※ 전환과정의 자발적 이직 퇴직, 업무재분석 등으로 전환(예정)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별첨 2>

기관 업무별 임금인상률(1~5%)

- 노동가치에 따른 적절한 임금수준 보장(기관별 임금수준 수렴)
- 이윤율, 직무내용, 직영 후 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노동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기관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상향
 - 직원(사원) 급에 대해서는 각 군별 최고인상률(3%, 5%)을 적용하고 반장 소장 등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

	‘가군’ (1~3%)	‘나군’ (3~5%)
(1 직군) 시설 정화방역 사육관리	시민봉사담당관 행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수련원 데이터센터, 은평병원 서북병원 이동복지센터,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도로사업소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민방위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시립대학교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어린이병원 창계천문화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대공원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2 직군) 경비 운영지원	소방재난본부 공무원수련원 데이터센터, 은평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공원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시민봉사담당관 시립대학교, 역사도심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이동복지센터, 창계천문화관 한양도성연구소, 한성백제박물관, 시립미술관 품질시험소, 도로사업소, 중랑물재생센터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디자인재단
(3 직군) 운전 주차관리 취사	소방재난본부 농수산식품공사, 세종문화회관	도로시설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교통방송 서울시설공단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서울디자인재단
(4 직군) 안내 매수표	서울역사박물관 창계천문화관 한양도성연구소, 서울대공원 서울도서관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주) 직군은 업무의 대체가능성과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첨 3>

임금테이블(연봉적용표, '14년 청소직무급)

연봉적용테이블(단위: 원)

구분 직무등급	시설(A)	시설(B)	경비	운전 주차관리	안내 매수표	기타 (취사 운영자원 등)
1	2,141,700	3,045,800	2,025,100	1,936,100	2,039,200	1,789,000
2	2,037,100	2,947,400	1,925,100	1,848,100	1,946,500	1,722,700
3	1,932,500	2,848,900	1,825,100	1,760,100	1,853,800	1,656,400
4	1,827,900	2,750,400	1,725,100	1,672,100	1,761,200	1,590,200
5	1,723,300	2,652,000	1,625,100	1,584,100	1,668,500	1,523,900
6	1,618,700	2,553,500	1,525,100	1,496,100	1,575,800	1,457,700
7	1,514,100	2,455,000	1,425,100	1,408,100	1,483,100	1,391,400
8	1,409,500	2,356,600	1,325,100	1,320,100	1,390,422	1,325,100
9	1,304,900	2,258,100	1,225,100	1,232,100	1,297,722	1,258,900
10	1,200,300	2,159,600	1,125,100	-	-	1,192,600

주) 건축물유지관리비(시설) 표준단가 및 중소기업 노임단가 적용(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4년 청소직무급(단위: 원)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제수당별도
1년차	1,304,000	60,000	100,000	100,000	
2년차		62,000	100,000	100,000	

※ '15.1.1일 청소업무 공무원 전환시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예정)

3. 연장근로(월, 주, 일 ____시간): 원(*산출내역:)
4. 휴일근로(월, 주, 일 ____시간): 원(*산출내역:)

급여지급일은 매월 (00)일로 월 (₩)을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 ※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결근시는 해당 일분을 일할 계산해 감함
- ※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연봉에 미포함)

제6조(근무실적평가) “서울시”는 계약서 제2조에 따른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공무원관리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 평가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공무원 전환에 따른 심사선발 등에 활용

제7조(연봉 계약의 동의 및 서약)

1. “근로자”는 서울시에서 정한 연봉제에 대하여 평가방식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봉제의 적용을 받기로 한다.
2. “근로자”는 상기 연봉에 동의하며 계약에 관한 비밀을 외부에는 물론 근로자 상호간에도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서울시”는 “근로자”가 계약서 제6조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권리의 승계)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서울시”가 승계한다.

제10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 “근로자” 상호 협의하여 해석한다.

제11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울시”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시” ○○사업소장 (인)

“근로자” 성 명 (인)

<별첨 5>

준공무직 전환결과 보고

▷ 기관(부서)명 : ○○○○○○

준공무직 전환 결과 총괄표

○ 시설 대상인원 ○○명 중 ○○명 전환, 전환제외 ○명(사유:)

(단위: 명, 만원)

	인 원	전환일	용역비(예산)	인건비총액(전환 후)	비고
시설					
경비					
..					

세부내역(명단)

(단위: 만원)

업무구분	이 름	연령(만)	성 별	자격사항 (자격증 등)	임금		비고 (반장 소장)
					기존	전환 후	
시설							
경비							
..							